

문화재매매업 지위승계 신고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하며, 뒤쪽의 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시	발급일	처리기간	10일
------	------	-----	------	-----

승계를 하는 사람	성명(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)	주민등록번호(법인인 경우 법인번호)
	주소(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지의 소재지)	전화번호

승계를 받는 사람	성명(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)	주민등록번호(법인인 경우 법인번호)
	주소(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지소재지)	전화번호

영업소	명칭(상호)	변경 전
		변경 후
	영업의 종류	
	소재지	전화번호

허가번호	
------	--

승계사유	[] 양도·양수 [] 그 밖의 사유()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

분실사유	
------	--

「문화재보호법」 제7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(승계를 받는 사람)

(서명 또는 인)

대리인이 문화재매매업 지위승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위임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			
위 임 장	본인은 문화재매매업 지위승계 신고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아래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.		
	신고인: (인)		
대리인 인적사항	성명	생년월일	전화번호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

1.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1부
2.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
 - 양도의 경우: 양도·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
 - 그 밖의 경우: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
3. 문화재매매업의 자격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1부
4.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각 1부(양수인이 문화재매매업의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합니다)

유의 사항

매매업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매매업허가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.

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체 확인서

1.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「문화재보호법」 제75조, 제75조의2, 제78조, 제80조 및 제80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, 별표 5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및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(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)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.

가.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

처분받은 날	행정처분의 내용	행정처분의 사유

나.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

적발일	문화재보호법 위반내용	진행 중인 내용

- 1)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처분받은 날란에 "없음"이라고 적어야 합니다.
- 2) 양도·양수신고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,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란을 보완하도록 해야 합니다.
2.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,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된 때에는 「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」 제57조 및 별표 5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 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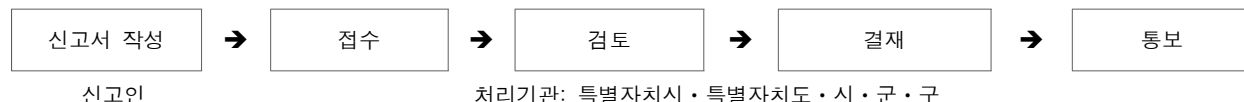
양도인 성명
주소

(서명 또는 인)

양수인 성명
주소

(서명 또는 인)

처리 절차



신고인

처리기관: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